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11일 00시 14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에너지정책과	3
고압가스 (수입업자·운반자) (변경)등록	3


고압가스 (수입업자·운반자) (변경)등록

2022.03.31 14:49 조회수 575 등록자 김승미

✓ 민원사무명	고압가스 (수입업자·운반자) (변경)등록
✓ 민원내용	고압가스 (수입업자·운반자) (변경)등록
✓ 관계법령	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, 제5조의4
✓ 구비서류	<p>1. 등록 신청 시</p> <p>가. 사업계획서 1부</p> <p>나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,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</p> <p>다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. 다만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 <p>1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</p> <p>2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</p> <p>2. 변경등록 신청 시</p> <p>가.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</p> <p>나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</p>
✓ 처리부서	에너지정책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
✓ 수수료	1만5천원
✓ 처리기간	5일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
✓ 기타참고사항	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[별지 제5호의2서식] 고압가스[수입업자, 운반자(등록, 변경등록)]신청서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).hwp (1747 hit/ 21.0 KB) ↓

[미리보기](#)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이전글

< (용기·냉동기·특정설비)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

다음글

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>

Yeosu Web Contents

